

원산지  
CASE 1 자율조리기기

판정번호  
H351954

물품 정보

용도

- 음식 조리 과정을 자동화하는  
가정용 자율 조리기기

구성

- 대용량 디스펜싱 시스템 중국산
- 소용량 디스펜싱 시스템 중국산
- 인덕션 버너 중국산
- 전동 교반 장치 중국산
- 카메라·LED 시스템 대만산

CBP 판단

- 5개 구성요소 모두 쟁점물품의 조리 기능에  
있어 중요한 요소임
- 특정 전자부품인 PCBA의 원산지만으로는  
전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음
- 단순 조립 공정(부품 체결·연결 공정) 수행국과  
PCBA 제조국(일부 시나리오에서 한국)은  
쟁점물품의 원산지로 고려되지 않음

물품의 주요 구성요소 5개 중 4개 요소의 원산지  
(중국)를 전체 기기의 비특혜원산지로 판정

제조 공정



- 시나리오 A·B·C 별로 제조 공정이 수행된  
국가(한국·중국) 상이

|   |   |    |                 |
|---|---|----|-----------------|
| A | 1 | 중국 | PCBA 제조 공정      |
|   | 2 | 중국 | 구성품 부품 체결·연결 공정 |
|   | 3 | 한국 | 최종 공정 및 제품 선적   |
| B | 1 | 중국 | PCBA 제조 공정      |
|   | 2 | 한국 | 구성품 부품 체결·연결 공정 |
|   | 3 | 중국 | 최종 공정 및 제품 선적   |
| C | 1 | 한국 | PCBA 제조 공정      |
|   | 2 | 중국 | 구성품 부품 체결·연결 공정 |
|   | 3 | 중국 | 최종 공정 및 제품 선적   |

미국 원산지 결정

시나리오 A·B·C 모두  
구성요소의 원산지(중국)를  
제품의 비특혜원산지 판단